

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**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 시행**

1. 가락시장 시설관리와 관련입니다.
2. 상기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순찰결과 15층 접견실 유리가 파손되어 유리교체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.
  - 가. 공 사 명 : 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
  - 나. 공사금액 : **5,965,000원(부가세포함)**
  - 다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9일
  - 라. 공사내용 : 15층 접견실 파손유리 교체(1,400x600, 52mm 삼중로이유리)
  - 마. 예산과목 : 건물유지비[사업비용-영업비용-도매시장관리원가-수선유지교체비]
  - 바.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배정액	기집행액	금회집행액	예산잔액
건물유지비	436,174	218,090	98,988	<b>5,965</b>	331,221

- 사. 계약방법 : **일반수의계약**
- 아. 계 약 자 : 우신건설(주) 대표 이상현 / 1588-2620  
(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72번길34-5, [상동])

- 붙 임 :
1. 수 의 계 약 사 유 서 ..... 1부.
  2. 기 초 산 출 서 ..... 1부.
  3. 공 사 개 요 ..... 1부.
  4. 예 정 공 정 표 ..... 1부.

5. 공 사 시 방 서 ..... 1부.
6.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..... 1부.
7. 부 당 계 약 특 수 조 건 검 검 표 ..... 1부.
8. 공 사 도 면 ( 별 첨 ) ..... 1부.
9. 견 적 서 ( 별 첨 ) ..... 2부. 끝.

---

차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김두영**    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정우철**    건설안전본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김승호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4/06

협조자    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신종철**

시행    시설안전팀-194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8.04.06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 )  
우 138-701  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 <http://www.garak.co.kr>  
전화 02-3435-0544    전송 02-3435-0394 / kdy21231@garak.co.kr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 공개

# 수익계약사유서

계약건명	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		
소요예산	금 5,965,000원(금 오백구십육만오천원정) / 부가세포함		
계약업체	우신건설(주) (대표 : 이 상 현)		
담당자명	이 상 현	담당자연락처	1588 - 2620
<별표 1> 수익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			“해당없음”
관련근거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		
수익계약 사유	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5,965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소액이며, 회계규정 제238조 제5항에 의거 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“우신건설(주) 대표 이상현”과 수익계약을 시행코자 함		
5회 이상 동일업체 반복계약 조회 여부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우선구매 해당사항 (모두선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장애인생산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기업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친환경상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기술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개발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·자활기업·마을기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

2018. 4. .

작성자 4급 김 두 영 (인)  
 확인자 팀장 정 우 철 (인)

## 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지 2>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# 기 초 산 출 조 서

(단위 : 원)

공 사 명	단위	수량	견적금액		적 용
			우신건설(주)	(주)거송창호	
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	식	1	5,422,728	6,116,364	5,422,728
부가세	식	1	542,272	611,636	542,272
합 계	식	1	5,965,000	6,728,000	5,965,000

2018. 4.

작성자 시설안전팀 4급 김 두 영  
확인자 시설안전팀 팀장 정 우 철

# 공사 개요

1. 공사명 : 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

2. 공사개요 및 현황

가. 공사개요

1) 위 치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(가락동 600) 가락몰 업무동 15층

2) 공사내용 : 15층 접견실 파손유리 교체(1,400x600, 52mm 삼중로이유리)

3)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9일간

4) 공사금액 : ₩5,965,000원(부가세 포함)

나. 예산현황 : 건물유지비[사업비용-영업비용-도매시장관리원가-수선유지교체비]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액	배정액	기집행액	금회집행액	예산잔액
건물유지비	436,174	218,090	98,988	5,965	331,221

3. 관급자재 내역 : 없음

4. 설계자 소속 : 시설안전팀 차장 성명 김 두 영

5. 설계심사자 소속 : 시설안전팀 부장 성명 신 종 철

6. 감독원 소속 : 시설안전팀 차장 성명 김 두 영

7. 검사원 소속 : 시설안전팀 차장 성명 김 두 영

시설안전팀 팀장 성명 정 우 철

8. 기 성 고 지급횟수 : 없음

9. 하자보수보증금 기간 : 계약금액의 2%, 1년

10. 지체 상금율 : 0.5/1,000

11. 설 계 서 열람장소 :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팀

[붙임 4]

# 예 정 공 정 표

1. 공 사 명 : 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
2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9일간
3. 예정공정표

(단위 : 일)

일 정 공 종	착공일로부터 일정						비 고
	5	10	15	20	25	29	
현장확인 및 자재 준비	■	■	■				
장비 및 인력 준비			■	■			
현장시공					■		
잔손보기 및 준공검사						■	

# 공사시방서

## 제1장 공사개요

1. 공 사 명 : 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(가락동 600) 업무동 15층
3. 목 적 : 구조물의 내구력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
4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29일간
5. 공사개요 : 15층 접건실 파손유리 교체(1,400x600, 52mm 삼중로이유리 1장)

## 제2장 일반시방서

### 1. 적용범위

가. 본 시방서는 『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』에 적용한다.

나.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,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.

- 1) 건축공사 표준시방서(국토해양부)
- 2)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
- 3) 건설기술 관리법,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
- 4) 공업표준화법,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.S규정

### 2. 용어의 정의

- 1) 발주처 : 공사의 주체인 “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”를 말한다.
- 2) 계약상대자 : 발주처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 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- 3) 감독관 : 발주처에 의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.
- 4) 도 면 :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.

### 3. 시공도면

감독관은 공사 착공승인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4. 예정공정표

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예정(계획, 실행)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주요부분에 대한 착공일, 예정준공일과 시공도, 부분공정표 등을 도시하여야 한다.



## 5. 감독관의 권한

- 1) 공사용 반입자재의 검수
- 2) 공사 시공성과 및 작업의 품질관리
- 3) 작업 진도 확인 및 공정관리
- 4) 공사도면, 내역서, 시방서 준수 등 적정시공 확인
- 5)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계약이행여부 확인
- 6) 공사 중 도면 및 시방서에 관한 해석 및 현장 안전관리
- 7) 기타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문제의 결정 및 현장 지도 감독

## 6. 계약상대자의 의무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, 지표조건, 필요자재, 작업범위와 성격, 필요 편의시설, 현장과 주위상황,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설계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 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무단으로 변경시공을 할 수 없으며,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## 7. 공사용 재료

- 가. 품질 : 공사용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(K.S품목)을 사용하며, KS기준이 없는 품목은 동질이상의 자재로 시공하여야한다.
- 나. 공급원의 승인 :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의 발주이전에 감독관에게 공사에 사용하게 될 각종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 및 견본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부적합한 재료 :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부적합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(가락시장)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
## 8. 안전대책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, 안전시설,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화재와 각종 돌발사고의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장비, 기계, 기구류를 항상 보유하고 위치 및 사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고, 기존 시설물에 도급공사로 인한 손상,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으며,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현장내 적정한 위치에 공사안내판,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#### 9. 현장대리인 상주

현장대리인이 이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## 10. 불합격 공사의 조치

- 가. 계약서와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. 불량한 시공상태, 결함 있는 자재의 사용, 부주의로 인한 손상, 시공자의 무단 시공 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 발생시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대체, 재시공되어야 하며, 이에 따른 준공지연의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나.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다. 부적합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, 대체 및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11. 준공절차

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종별 분야별 시공 전경 및 공사 후 전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 사진첩(A4) 1부를 제작 후, 준공 요청 시 사진화일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1. 일반사항 및 가설공사

- 가.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.
- 나.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,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.
- 다. 장비의 설치시에는 아웃트리거에 침목 등을 고여서 장비를 설치한다.
- 라. 장비가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관계로 교통신호수 등 안전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.
- 마. 장비의 작업발판에는 적용 하중을 벗어나는 탑승 및 적재를 금한다.
- 바. 고소 작업으로 상하부 동시 작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## 2. 해체 및 철거공사

- 가. 외부 커튼월 수직바는 무리한 힘을 가하여 해체하지 않는다.
- 나. 외부 커튼월 수직바의 조립시에는 해체의 역순으로 하며 바람 및 기타 충격 등에 탈락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.
- 다. 유리의 해체 및 철거시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거한다.
- 라. 해체 폐기물은 당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.
- 마. 유리의 해체 및 철거 파편이 15층 접견실 내부에 비산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를 실시한다.

## 3. 유리공사

- 가. 유리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52mm 로이삼중유리로 시공한다.
- 나. 유리의 고정에는 노턴테이프 및 구조실란트 등으로 밀실하게 고정한다.
- 다. 유리의 고정 후에는 외부에서 외기 및 물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웨더실란트로 마감 처리를 실시한다.
- 라. 유리의 부착 후에는 외부 커튼월 수직바를 설치하며 무리한 조임 및 압착등으로 기존 설치된 유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.

##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

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“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”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.

우리 공사 위 (공사, 용역, 물품구매) 입찰, 계약, 계약이행 과정(준공 이후도 포함)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.

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(준공 이후도 포함)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,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,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【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】

- 사 무 실 : ☎ (02) 6360-4881~2  
FAX 6360-4908

2018. 4. .

### 서울시농수산물공사

발주부서	건설안전본부장	김 승 호
	시설안전팀장	정 우 철
	감독담당	김 두 영
계약부서	경영본부장	김 성 수
	재무팀장	김 이 종
	계약담당	김 성 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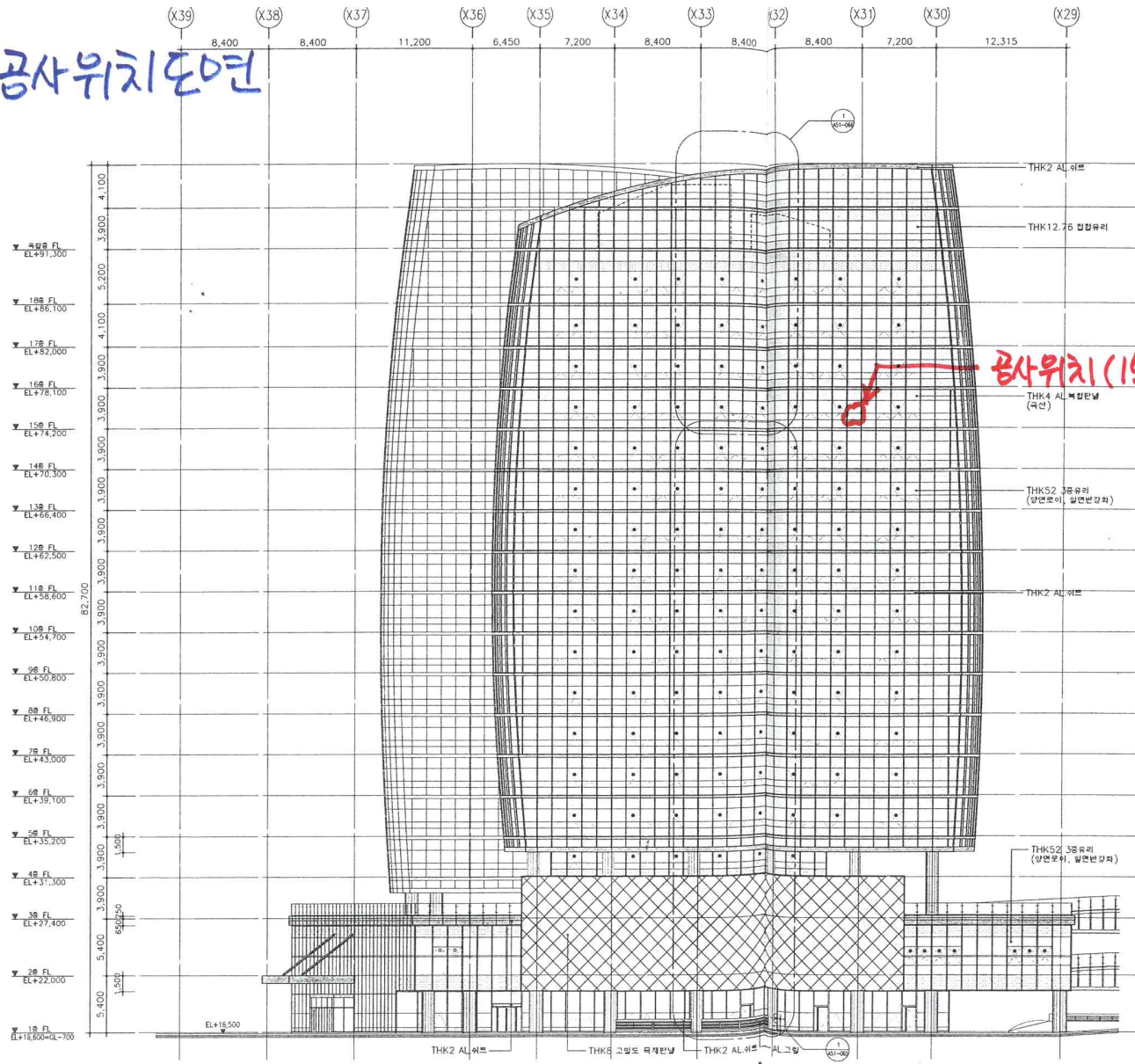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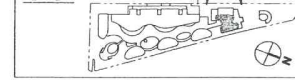
## 「부당계약특수조건」 발주부서 체크리스트

<b>사 업 명</b>	업무동 15층 유리교체공사					
<b>발주부서</b>	부서명	시설안전팀	작성자	김 두 영	연락처	02-3435-0544
<b>계약부서</b>	부서명	재무팀	작성자	김 성 속	연락처	02-3435-0383
<b>제출일자</b>	2018. 4. .					

연번	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	해당유무	
		발주	계약
1	과업지시서,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(甲乙)용어 대신 공사를 ‘발주부서’로 계약업체를 ‘계약상대자’로 표기했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2	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,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3	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(물량증감, 물가상승 등) 계약 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4	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5	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6	포괄적·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7	과업 내용에 ‘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’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8	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9	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10	(협상계약)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(평가점수, 평가위원 명단)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/N ■□	Y/N ■□

[붙임 8]

공사위치도면



1 서측 확대입면도  
축척 1/200

1/2

